

## 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

### 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98. 9. 11.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98. 9. 5
- 다. 상 정 일 자 : 98. 9. 14

(제6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~2차 회의)

### 2. 제안 설명요지

- 가. 제안설명 : 내무과장 최 영 옥
- 나. 개정사유

- 지방자치법 제106조와 동법시행령 제4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 도모를 위해 설치된 출장소중 교통 통신의 발달로 원격지 요건을 결하고 있으면서 관할구역 인구의 감소 등으로 업무량이 크게 감소한 출장소를 폐지하고 동 조례의 자구 수정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.

#### 다. 주요내용

- 제명 : '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'를 '화순군면출장소조례'로 하고,
- 교통 통신의 발달로 원격지 요건을 결하고 있으면서 주민 이용 실적이 저조한 도암면 용강 출장소와 이양면 목곡출장소를 폐지하며,
- 제4조 제2항중 '읍면장'을 '한천면장'으로 개정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양정열)

-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도암 용강 출장소와 이양 목곡 출장소를 폐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함.
- 그러나, 비록 소수의 주민일지라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뜻에서 등,초본등의 제증명 발급 업무는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접수 받아 출장시 전달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,

○ 상위법규 관계나 개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‘생략’

5. 토론요지

‘생략’

6. 심사결과

‘원안가결’

첨 부 : 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개정조례안

## 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개정조례안

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화순군면출장소조례

제1조 (목적)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원격지 주민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 출장소(이하 '출장소'라 한다.)를 둔다.

제2조 (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) 출장소의 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.

명 칭	위 치	관 할 구 역
한천면 영외출장소	한천면 반곡리	반곡리, 평리, 정우리, 동가리, 고시리

제3조 (관장사무) 출장소의 관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민원사무
2. 세정사무
3. 구호사무
4. 산업사무

제4조 (소장) ① 출장소에 소장을 두고 일반직 6급 직원으로 보한다.

②소장은 군수 또는 한천면장의 명을 받아 출장소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5조 (공무원) 소장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어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6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'98. 10. 1 부터 시행한다.